- 제5조(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)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. 다만,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회원종목단체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, 10, 6.>
  - ②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 감독과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    - 1.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과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
  - 2.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
  - 3.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
  - 4.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
  - 5.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해당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
  - ③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  - 1.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
  - 2.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

- 3.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안경기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 는 사람
- 4.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,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 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
- 5.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해당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